

The 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Application
Checklist



본 안내문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 대처 방안 및 유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아동탈취, 이렇게 대처하세요

|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활용 체크리스트 |



법무부

1 | 국제아동탈취 상황 대처 방안 안내



Guidance

본 안내문은 대한민국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발효된 국가간에 16세 미만 아동이 탈취되었을 때 대처 방안 및 유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아동 탈취에 대해서는 ①외교부 영사서비스과(전화: 02-2100-8161)에 문의하여 외교적 지원을 요청하시거나 ②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을 통한 구제수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탈취된 아동의 반환이나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한 지원은 당해 외국 중앙당국에 직접 또는 대한민국 법무부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협약에 따라 중앙당국에 접수하는 지원 신청과 별도로 법원에 아동반환청구 내지 면접교섭권행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소개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불법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자조약입니다. 국제아동탈취로 인해 양육권·면접교섭권이 침해된 부모는 이 협약에 따라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양육권·면접교섭권을 결정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제아동탈취라는 상태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2012. 12. 1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였고, 2013. 3. 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과 동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탈취’란 부부 일방 기타 가까운 가족에 의한 유괴를 말합니다. 국제아동탈취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침해하고 부모와 아동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3 | 다른 나라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

신청접수방법

- 법무부 국제법무과로 접수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우: 13809
 - 이메일: ildhd@moj.go.kr

신청서

- 아동반환지원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면접교섭권행사지원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서식은 법무부(www.moj.go.kr) > 법무정보 > 국제아동탈취 >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첨부 서류 (각 서류의 한국어 번역문 포함*)

해당 체약국 공용어 또는 해당 체약국 중앙당국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

-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서류
- 아동의 여권 등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및 신청인의 양육권 등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출생증명서
 - 신청인의 양육권에 관한 판결문 등
- 아동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및 아동이 해당 체약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 학교·병원 기록, 여행 서류 및 주고받은 서신 등
- 신청인과 아동을 탈취·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 사이에 이혼이나 탈취된 아동의 양육권·면접교섭권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 이혼·양육권·면접교섭권 재판의 판결문, 소송계속 증명서 등
- 아동을 탈취·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신원, 소재 등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 그 밖에 아동의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관련 자료(있다면)

9 기타 연락 가능한 관련 기관 · 단체 및 정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www.lawhome.or.kr>)
 - 전국 31개 지부 및 미국 6개 지부 설치 · 운영
 - 법률상담, 화해조정, 소송구조 등 법률구조 제공
※ 외국인을 위한 영어상담,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운영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 대표전화: 1644-7077
- **건강가정지원센터**(<http://www.familynet.or.kr>)
 - 여성가족부 설립 재단법인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지도 · 평가
 - 전국 지역센터 151개소, 이혼전문상담 인증센터 17개소 운영
 - 가족상담(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집단상담 등) 제공
 - 대표전화: 1577-9337(상담 및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결)
- **경찰청 아동 · 여성 ·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http://www.safe182.go.kr>)
 - 전화(국번 없이 182번)로 실종아동 신고 가능
 - ※ 다만 국제아동탈취 중에서도 약취(폭행,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의 행사)가 수반된 경우에 한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
 - 18세 미만 아동 사전등록제 운영(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록)
- **INCADAT** (<http://www.incadat.com/>)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관련 판례 데이터베이스(영문)
 - 변호인을 선임하여 국내외 법원에서 아동반환 · 면접 교섭권 행사 관련 재판절차 진행시 참고자료로 활용

www.lawhome.or.kr
www.familynet.or.kr
www.safe182.go.kr
www.incadat.com



4 | 대한민국으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

신청접수방법

- 법무부 국제법무과로 접수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우: 13809
 - 이메일: ildhd@moj.go.kr

신청서

- 아동반환지원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면접교섭권행사지원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서식은 법무부(www.moj.go.kr) > 법무정보 > 국제아동탈취 >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첨부 서류 (각 서류의 한국어 번역문 포함*)

한국어로 번역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어 번역문 첨부 가능

-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서류
- 아동의 여권 등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및 신청인의 양육권 등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출생증명서
 - 신청인의 양육권에 관한 판결문 등
- 아동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 외의 국가라는 사실 및 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 학교·병원 기록, 여행 서류 및 주고받은 서신 등
- 신청인과 아동을 탈취·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 사이에 이혼이나 탈취된 아동의 양육권·면접교섭권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 이혼·양육권·면접교섭권 재판의 판결문, 소송계속 증명서 등

※소송계속증명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아동의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관련 자료(있다면)

5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지원 신청 요건

■ 16세 미만 아동

- 협약은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이 16세가 되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Perez-Vera Explanatory Report)
- 탈취된 아동이 16세가 되면, 16세 미만일 때 탈취 혹은 면접교섭권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신청이 접수되었더라도 협약상 지원이 중단됩니다.

■ 탈취 시점에 아동의 상거소(常居所)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약이 발효된 국가일 것

- 아동의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으로 탈취될 시점에 아동의 상거소(‘사람이 그 생활의 중심을 가지는 장소’)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약이 발효된 국가 내에 있었다면 협약에 따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의 탈취로 인해 신청인의 양육권·면접교섭권이 침해될 것

- 지원 신청할 때 보내주신 신청서와 첨부 서류상 양육권·면접교섭권이 침해되는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제공합니다.
- 다만, 아동에 대한 양육권·면접교섭권과 아동 반환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겨져 있으므로, 중앙당국의 신청 접수는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협약이 대한민국과 아동이 탈취된 국가와의 사이에서 발효되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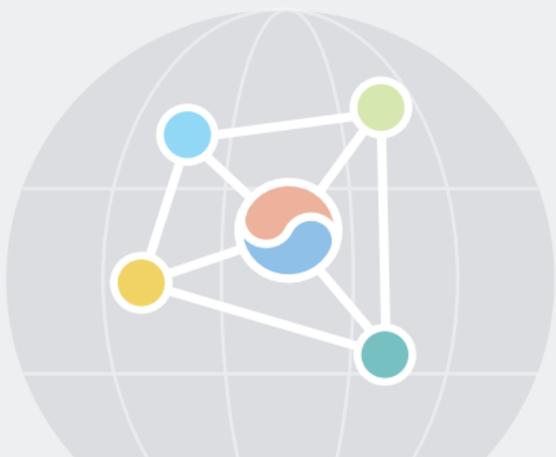
- 아동이 대한민국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발효된 체약국으로 탈취되었다면, 대한민국 법무부를 경유하거나 직접 탈취된 외국의 중앙당국에 협약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발효된 국가('16. 9. 현재)〉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우루과이, 세이셸, 아일랜드, 체코, 안도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몬테네그로, 러시아, 미국, 멕시코, 리투아니아, 에콰도르, 중국(홍콩·마카오 한정), 도미니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가봉, 파라과이, 일본,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페루, 스위스,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몰도바 (총 32개국, 지속적 확대예정)

- 대한민국과 협약이 발효된 외국의 중앙당국 연락처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국제아동탈취)공지사항)‘우리나라와의 협약 발효국 중앙당국의 연락처 등 정보’) 또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http://www.hcch.net/index_en.php?act=conventions.authorities&cid=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아동 탈취에 대해서는 ①외교부 영사서비스과(전화: 02-2100-8161)에 문의하여 외교적 지원을 요청하시거나 ②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을 통한 구제수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6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에 따른 중앙당국의 지원

■ 다른 나라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

- 신청이 접수되면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으로의 지원 신청서 전달 등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또한 ① 아동 소재국 법원 절차 및 관련 법률 정보 수집과 ② 아동의 소재 발견 진행 현황 파악을 도와 드립니다.

■ 대한민국으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

- ① 아동의 소재 발견
- ② 협약의 적용과 관련된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 ③ 그 밖에 아동의 소재 확인 시 임의적 반환 요청 등 협약에서 규정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7 | 아동이 탈취된 경우 소재 파악 등 대처 방안

- 아동의 탈취 사실을 알았지만 어디로 탈취되었는지 모르는 경우
 - 아직 외국으로 탈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경찰서 실종 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로 신고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아이의 사진을 신속하게 제출할 것
 - 아동이 국외로 탈취된 사실은 확인되나 어느 국가로 탈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대한민국 법무부를 통해 인터폴 Yellow Notice 등록 신청
- 아동이 다니는 학교·병원에 연락하여, 탈취한 부모로부터 아동의 학생기록부 등 기록을 보내달라는 요청 등이 오면 그 사실을 즉시 알려달라고 부탁할 것
- 아동이 탈취되었다는 사실을 가족·친지 기타 지인들에게 알리고, 탈취한 부모 또는 아동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즉시 알려달라고 부탁할 것
- 아동을 탈취·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타방 부모에게 연락하여 자발적 반환·원활한 면접교섭권 행사가 가능하게끔 설득을 시도할 것
 - 단, 타방 부모와 연락 중 탈취(불법적인 이동·유치) 상황에 동의하거나 탈취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법원에서 아동 반환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아동에 대한 재탈취 시도는 아동의 안전과 외국에서의 형사소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권고해드리지 않습니다.



8 | 국제아동탈취 우려 상황 및 가능한 예방적 조치

■ 국제아동탈취 우려 상황

- 과거에 부모중 일방이 아동을 탈취한 전력이 있는 경우
- 부모중 일방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문화적·정서적으로 외국과 가깝고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 부모중 일방이 가정폭력 또는 통제 성향을 보인 적이 있는 경우
- 부모중 일방이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직장 등 경제활동을 정리한 경우

■ 예방적 조치 (지문 등 사전등록제)

-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www.safe182.go.kr)에서 신청
- 사전에 아동의 지문 정보를 등록해두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경찰에서 아동의 신원을 바로 확인 가능
- 대한민국에서 소재 발견된 아동의 부모를 즉시 찾아줄 수 있음
- 문의: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02-3150-2249)



Ministry of Justice-Republic of Korea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신청 등에 관한 질의사항은
전화(02-2110-3661) 또는 이메일(ildhd@moj.go.kr)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당국 담당기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우 : 13809